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독서교육 조례안 입법예고

『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독서교육 조례안』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『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2년 09월 26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이유

학교의 독서교육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능력 향상과 풍부한 정서 함양 및 건전한 독서교육 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독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·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
나.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)

다. 독서교육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독서활동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, 제6조)

- 라.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나 교직원에게 연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마. 독서행사 실시 및 독서지도 유공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- 바.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- 사. 학교도서관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입비 지원,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5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(참조 :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, 팩스 032-440-8784, 이메일 : jjhong70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 출 자	해당사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 고
○ 주 소 :			
○ 성 명 :			
○ 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독서교육 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독서교육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독서문화진흥법」 제10조, 「학교도서관진흥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, 독서교육 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학교 독서교육”이란 학생들에게 행하여지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을 통해 독서태도, 지식, 기술, 흥미, 습관 등의 형성과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교육과정상의 활동을 말한다.
2. “학교”란 「유아교육법」의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3. “학교도서관”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·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)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독서교육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

거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.

② 독서교육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독서교육 전담부서) 교육감은 독서교육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.

제6조(독서활동지도)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에 따라 독서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.

제7조(연구비 지원) 교육감은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나 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독서 행사)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학교 독서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행사를 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 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지도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서 행사, 포상·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9조(공공도서관과의 협력)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 협력할 수 있다.

제10조(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)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과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행정상·재정상의 조치)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·재정상의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☐ 독서문화진흥법 ○ 제10조(학교의 독서 진흥) ☐ 학교도서관진흥법 ○ 제15조(독서교육 등) ☐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○ 제9조(독서교육 등)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【독서문화진흥법】

제10조(학교의 독서 진흥)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,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1.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학교 도서관의 신설·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3. 학교의 독서 자료의 확보와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
4. 독서 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·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

③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, 학교 도서관의 설치·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.

④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⑤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 교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.

【학교도서관진흥법】

제15조(독서교육 등)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·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② 제1항에 따른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.

【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】

제9조(독서교육 등) 교육과학기술부장관·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상황
2. 학생들의 독서수준
3. 그 밖에 학생들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3항 관련)

1. 재정수반요인

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·재정상의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 (안 제2조)

2.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규정

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0조제3항

3. 미첨부 사유

향후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할 경우 예산이 수반될 수 있으나 현재 조례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을 추정할 근거 없음.

4. 작 성 자

문화복지위원회 안 영 수 의원